제2-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

이 특약은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2-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

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는 계약자로 합니다.

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제2-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

-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이 특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.
- ② 회사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「제1호의 사유」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계약 자적립액이 있을 경우 또는 「제2호 및 제3호의 사유」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「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」 (이하 "산출방법서"라 합니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해당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 또한,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은 「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」에서 제외하며, 다음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은 「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」이 변경됩니다.
 - 1.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(주계약 제외)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 급사유로 인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경우 (다만, 한 특약 내 여러 보장계약이 있을 경우, 각 보장계약별 효력이 없어진 보장계약에 한 합니다)
 - 2.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(주계약 제외)이 해지된 경우
 - 3.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납입면제대상 계약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

계약자적립액

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
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

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,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[㈜]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.

- ㈜ 산출기초율: 계약체결비용, 계약관리비용, 이율 및 위험률 등
- ③ 회사는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(주계약 제외)의 무효, 취소 또는 철회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「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」에서 제외하며, 실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(다만, "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 액"을 차감한 금액) 중 해당 계약에 대한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립니다.

감액

보험료, 보험금,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(이에 따라 보험료, 보험금 및 계약자적립액(해약환급금)도 줄어듭니다.)

- ④ 회사는 계약자가 「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」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「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」의 보험료만큼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도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. 이 때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,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-11조(해약환급금)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 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, 감액 이후 해약환급금은 최초 가입 당시에 안내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⑥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「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」의 변경이 있는 경우, 계약자는 변경된 「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」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
⑦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제2-9조 특약의 소멸

-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 - 1. 주계약이 해지, 무효,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.
 다만,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(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.
 - 2.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
 - 3. 제2-2조의2(보험료 납입면제사유)에서 정하는 보험료납입면제사유 이외의 사유로 보험료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 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,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- ③ 제2-2조의2(보험료 납입면제사유)에서 정하는 보험료납입면제사유 이외의 사유로 보험료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납입면제 발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,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 1-5조(보험금 등의 청구)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 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1-6조(보험금 등의 지급절차)를 따릅니다. 다만, 제1-6조(보험금 등의 지급절차) 제2항 및 제2-5조의2("보험금 등의 지급절차"에 대한 특칙)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

산합니다.

- ⑤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"사망"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.
 - 1.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: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.
 - 2. 관공서에서 수해,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
실종선고

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

민법 제27조(실종의 선고)

-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 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② 전지에 임한 자,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,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 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,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.

<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.>

⑥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「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」과 관계없이 지급금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지급합니다.

제2-9조의2 "특약의 무효"에 대한 특칙

제1-10조(특약의 무효) 제1항 이외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(다만, "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"을 차감한 금액)을 돌려 드립니다.

1. 피보험자가 "암" 및 "중증 갑상선암"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-1 조의3("암"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) 제4항에서 정한 "「여성유방암 및 전립선암」이외의 암" 또는 제2-1조의4("중증 갑상선암" 및 "중증 이

외 갑상선암"의 정의 및 진단 확정) 제1항에서 정한 "중증 갑상선암" 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

무효

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함

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

제2-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

-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제2-11조(해약환급금)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 다만, 제2-2조의2(보험료 납입면제사유)에서 정하는 보험료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.

제2-11조 해약환급금

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. 다만, "해약환급금 미지급형"의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"해약환급금 미지급형"의 경우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

- 1. 이 특약의 "해약환급금 미지급형"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"일반형"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.
- 2. 회사는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(환급률 포함) 수준을 "일반형"과 비교·안내합니다.
- 3. "1" 및 "2"에서 "일반형"은 "해약환급금 미지급형"과 동일한 보장내 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.
-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

청구하여야 하며,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 급금을 지급합니다.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<부표2-1>"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"에 따릅니다.

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.

제5관 기타사항

제2-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

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

부표2-1 │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



구	분	적 립 기 간	지급이자
납입면제된 보험료 (제2-2조의2 및 제2-5조의2)	보험료납입면제 기일 이내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지 못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은 경우	보험료 납입면제 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	보험계약대출이율
		보험료 납입면제 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	보험계약대출이율 + 가산이율(4.0%)
		보험료 납입면제 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	보험계약대출이율 + 가산이율(6.0%)
		보험료 납입면제 기일의 91일 이후 기간	보험계약대출이율 + 가산이율(8.0%)
해약환급금 (제2-11조)		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	· 1년이내 : 평균공시이율의 50% · 1년초과기간 : 평균공시이율의 40%
		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	보험계약대출이율

- 주) 1.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,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.
 - 2.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 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.
 - 3. 가산이율 적용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 - ① 소송제기
 - ② 분쟁조정신청(다만, 분쟁조정신청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합니다)
 - ③ 수사기관의 조사
 -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

- ⑤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
- ⑥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
- ⑦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

부표2-2 |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(암) 분류표 (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)

별첨2 [표 5-1] 참조

유방암 분류표

.

부표2-3



별첨2 [표 8-1] 참조

부표2-4 전립선암 분류표



별첨2 [표 8-2] 참조

부표2-5 갑상선암 분류표



별첨2 [표 8-4] 참조

[남녀특정암납입면제형] (간편)보험료납입면제특약 (무배당, 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






약 관 목 차

제1편 일반사항

[특약 약관] 제1편 일반사항 참조

제2편 개별사항

제1관 용어의 정의 등

제2-1조 특약의 보장개시

제2-1조의2 개별 용어의 정의

제2-1조의3 "암"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

제2-1조의4 "대장점막내암"의 정의 및 진단확정

제2-1조의5 "비침습방광암"의 정의 및 진단확정

제2관 보험금의 지급

제2-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

제2-2조의2 보험료 납입면제사유

제2-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

제2-3조의2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

제2-4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

제2-5조 사고증명서

제2-5조의2 "보험금 등의 지급절차"에 대한 특칙

제2-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

제2-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

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제2-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

제2-9조 특약의 소멸

제2-9조의2 "특약의 무효"에 대한 특칙

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

제2-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-11조 해약환급금

제5관 기타사항

제2-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

[부표2-1]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

[부표2-2]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(암) 분류표(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대장점막 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)

[부표2-3] 유방암 분류표

[부표2-4] 전립선암 분류표

[남녀특정암납입면제형]

(간편)보험료납입면제특약

(무배당, 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
- ※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장이 가능합니다.
- ※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종목에 따라 특약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- 일반심사형의 경우: "(간편)" 부분이 없습니다.
- 일반형의 경우: "(무배당, 해약환급금 미지급형)" 부분이 "(무배당)"으로 변경됩니다.
- ※ "간편심사형"과 "일반심사형" 모두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- ※ 이 특약명 "[남녀특정암납입면제형](간편)보험료납입면제특약(무배당, 해약환급금 미지급형)"에서 남녀특정암이라 함은 "여성유방암" 및 "전립선암"을 말합니다.

제1편 일반사항

[특약 약관] 제1편 일반사항 제1-1조부터 제1-13조까지를 이 특약 "제1편 일반사항" 으로 합니다.

※ [특약 약관] "제1편 일반사항"의 위치는 목차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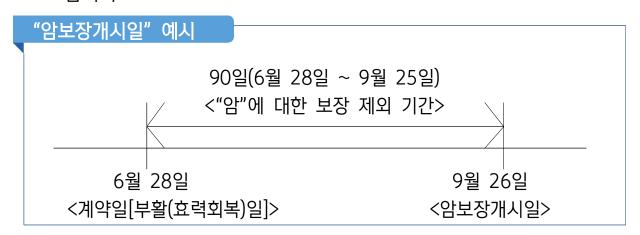
제2편 개별사항

제1관 용어의 정의 등

제2-1조 특약의 보장개시

- ① 회사는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 또한,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-13조[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]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(효력회복)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(효력회복)일로 합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암보장개시일은 제2-1조의3("암"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) 제1항에서 정한 "암"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, 계약

일[부활(효력회복)일]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.



제2-1조의2 개별 용어의 정의

제1-2조(용어의 정의) 외에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- 1.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: 다음을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으로 하며, "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"과 "각「보험료납입면제대 상계약」의 보험료 납입기간"이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.
 - 가. 이 특약의 부가시에 비갱신형 주계약(전환형 계약 제외)
 - 나. 이 특약의 부가시에 주계약에 부가된 비갱신형 특약(이 특약 포함)

다만, 다음의 경우는 「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」에 포함되지 않으며, 제2-8조(특약내용의 변경 등)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가. 제2-2조의2(보험료 납입면제사유) 이외의 사유로 보험료납입을 면제하는 특약(다만, 이 특약의 보험종목 중에 한합니다)
- 나. 제2-2조의2(보험료 납입면제사유)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를 보험료납입면제사유로 하는 주계약 및 부가특약(다만, 이 특약 은 제외합니다)
- 다. 제2-2조의2(보험료 납입면제사유)에 따른 보험료납입면제사유 발생 시 소멸되는 주계약 및 부가특약
- 라. 중도부가특약

제2-1조의3 "암"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